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광주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노3488 판결 협박,모욕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5노3488 협박,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광병(기소), 최혜윤(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785 판결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화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적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함에도 외적명예가 모욕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피고인의 발언 중 특히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뭔 잘못했냐." "새끼야! 년 뭐여 새끼야!", "네가 공무원이냐 새끼야", "조심해 새끼야, 모가지를,

떼어버릴 라니까." 부분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조롱하여 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표현인점, 당시 지구대에는 동료 경찰들뿐만 아니라 협박죄의 피해자 B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행범으로체포된 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분풀이로 발언의 대부분을 모욕적 언사로 사용한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점(피고인은이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욕을 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등 발언의 경위와 배경, 발언의 전체적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적명예를 훼손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협박죄 부분과 당심에서 새로 유죄로 인정되는 모욕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15. 6. 19. 21:05경 광주 북구 문산로 61 라인1차아파트 공원 정각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B(여, 15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죽여버릴거야.", "니네들 애미애비 데려,
- 와, 서방파 불러서 너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 2.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람을 엮어 버릴려고 하냐...내가 애들한테 5미터나 떨어져서 이야기만 했는데 내가 애들을 때렸냐 뭐했냐...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뭔 잘못했냐 새끼야!... 년 뭐여 새끼야!, 네가 공무원이냐 새끼야, 너는 밤에 조심해라, 조심해 새끼야, 모가지를 떼어버릴 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B 진술 녹음)"을 새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여고생인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소란행위로 수차례 범칙금납부처 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